第299回國會
(臨時會)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法案審査小委員會)

第 1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1年4月14日(木)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 개정안(제도개선사항) 관련 보고
4.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에 대한 의장의견 제시의 건 관련 보고
5.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국회의 입법질서유지를 위한 특별법안(계속)
28.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29. 국회내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30.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계속)
31. 국회 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審査된案件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2.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 3
3.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 개정안(제도개선사항) 관련 보고 ····· 4
4.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에 대한 의장의견 제시의 건 관련 보고 ····· 12
5.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계속) ····· 22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7)(계속) ····· 22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발의)(계속) ····· 22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천 의원 발의)(계속) ····· 22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래 의원 발의)(계속) ····· 22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 ····· 22
27. 국회의 입법질서유지를 위한 특별법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28.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29. 국회내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특별법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30.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31. 국회 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14시23분 개의)

○소위원장 이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논의했던 국회 안건처리 절차 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포함하여 국회법 등 국회 관계법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입니다.

다만 국회법 등 국회 관계법 개정안 논의에 앞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부개정이 필요한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님의 각별한 당부말씀도 있었듯이 원내대표단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국회의 안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질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법 및 국회 관계법 개정안이 어떤 형태로든지 모양을 갖추어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법안심사소위가 적극적

으로 활동하여 생산적인 결과가 꼭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25분)

○소위원장 이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내용 개정 없이 용어만 바꾼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개정안 중에서 인용 조문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구체화하고 또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일부 용어만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 수정한 것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2.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소위원장 이군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입법심의관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심의관 이정득 입법심의관입니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횡으로 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부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규칙안은 동 규칙의 모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기본 방향은 국회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록물의 공개·열람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순서인데요, 이 부분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분석하여 수정·보완한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기록물 관리기관 및 국회기록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회의 기록 관리를 총괄하는 국회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은 국회도서관으로 하고 국회도서관 소속에 국회기록보존소가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도 국회 기록물 관리는 기록보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소속의 국회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기록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 원칙은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고 원본 상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회 기록 관리 대상 기록물은 국회사무처 등 소속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과 국회의 제도·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국회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 청원 문서와 그리고 국회 위원회 국정감사 및 공청회, 청문회 관련 기록물 등 국회의 주요 활동에 관한 기록물은 모두 영구 기록물로서 관리 대상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록물 관리는 생산된 기록물을 등록한 후 분

류·편철·정리하여 도서관의 기록보존소에 이관해서 보존하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신규로 생산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에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편철하여야 합니다.

소속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생산한 이러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 여부 등을 정리하여 도서관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관받은 기록물에 대해서 국회도서관에서는 비전자기록물과 전자기록물을 구분하여 기록물 보존방법에 따라서 보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비밀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밀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생산 부서가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되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소속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 경우나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비밀기록물을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매년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도서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속기관은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되 도서관으로 이관 시에는 공개 여부를 다시 분류해서 이관토록 규정하였고, 이관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도서관에서는 매 5년마다 공개·비공개 여부를 다시 분류하여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공개에 관한 심의를 위해서 국회도서관에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기록물 관리의 전문화를 위해서 기록보존소 정원의 4분의 1 이상의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두도록 하여 기록물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이 규칙은 본회의까지는 안 가고 운영위원회에서만 통과되면 됩니다.

저희들의 서류를 보관하고 철해 두는 하나의 절차규정입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법에 의한 것들은 거의 다 유사하게 똑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입법심의관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수정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3.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 개정안(제도개선사항) 관련 보고

(14시33분)

○소위원장 이군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 개정안 관련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보고사항은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사항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고 각 당의 원내대표 행정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논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안으로 성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보고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후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지금 배부해 드린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 개정안 조문별 주요내용(제도개선사항)이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제5조의3입니다.

현행은 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했는데 강명순 의원님께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 국회 통지기한을 3월 31일에서 1월 31일로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셨고 법제처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냈고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이 당해연도에 제출하는 법률안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계획 이외에도 정부 법안은 수시로 오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맞습니다. 수시로 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1월 31일로 당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김유정 위원 제출계획을 통지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채택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예.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제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인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관 상임위가 없는데 변재일 의원님께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권성동 의원님께서는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하자는 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의견도 냈고 교과부 의견도 있었고 과기위도 의견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주로 교과위 소관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어제 원내대표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교과위로 가는 것으로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어제 교과위 위원들 전체를 모아서 의견조율을 끝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그렇게……

○홍영표 위원 동의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견 없습니다.

○김유정 위원 제가 교과위라서 권성동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해서 오늘 일전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다행입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그것은 개인 의견이고, 원내대표께서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6쪽, 제46조 윤리위원회입니다.

지금 제46조에 보시면 국회는 윤리위원회를 두고 4항에 보시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성린 의원과 권영진 의원, 주성영 의원님께서 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규정을 국회규칙에서 국회법으로 상향 규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현재 국회규칙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정수라든가 또 인사청문특위 위원 정수가 전부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규칙에 있는 것들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성태 위원 괜찮네.

○소위원장 이군현 다른 것들과 격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김성태 위원 이의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다음 사항에 대해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7쪽, 제66조 심사보고서를 보시면 3항에 의장은 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고, 제81조의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에 보시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해서 배부하도록 하였고,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에도 보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해서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사무처에서는 실무적으로 의안·심사보고서·청원요지서를 인쇄하여 배부하는 것보다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해서 배부할 수 있

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사무처의 의견입니다.

○김유정 위원 필요하지요.

택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다음은 8쪽,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인데 이것은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께서 꼭 좀 논의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표발의의원 한 분을 명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송민순 의원님께서 공동대표 발의제도를 신설해서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일 때는 현재는 대표의원 1인만 명시했는데 교섭단체 수 범위만큼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공동대표발의 의원으로 지정·명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재는 2명까지 되지요? 그런데 또 송 의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9쪽의 수정의견에 보시면 교섭단체의 수 범위만큼 공동대표를 두자고 하셨는데 다시 수정의견을 내서 각기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의원 1인씩 명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현재는 최대 여덟 분이 명시되게 됩니다.

○김성태 위원 여덟 분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김성태 위원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소위원장 이군현 너무 많지 않나?

○김유정 위원 여덟 분이, 각각 다른 정당의 의원님들이……

○김성태 위원 당 대표……

○김유정 위원 공동발의 하셨을 경우에 명시하는 것이지……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맞습니다.

○김유정 위원 그 당이 전부 다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그렇지요. 최대한 저희들은……

○김유정 위원 최대 맥시멈 8명까지 공동발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대표발의자가.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김성태 위원 이것은 너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군현 많지 않나요?

○김유정 위원 아주 많을 경우에 8명이 되는 것이지 통상은……

○김성태 위원 이 요건에 또 서로 각 정당이…… 의원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김유정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의원님들만으로 공동발의 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한 분이 대표발의자가 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김성태 위원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이 되고……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때는 두 분이 되는 것이지요.

○김성태 위원 민주당이 하면 한나라당 의원이 참여해서……

○김유정 위원 아니, 한나라당 의원님들만으로 공동발의가 될 수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한 분이고요.

○김유정 위원 한 분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김유정 위원 그러니까 크게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이군현 예를 들면 진보신당이다, 민노당이다 해서 법안을 계속 내실 텐데?

○김유정 위원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민노당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동발의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소위원장 이군현 공동발의는 괜찮은데 이 명칭이 공동대표발의거든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아주 적은 데하고 교섭단체하고 대표성을 등가성을 같이 가져주는 격을 주는 거거든.

그냥 발의자는 되지만 공동대표발의로 하는 것은 1명 의석 가진 정당의 의원님들이 했을 때 공동대표가 된다는 게…… 교섭단체야 그 정도면 충분히 대표성을 갖지만 조그마한 정당에까지 다 그냥…… 발의를 하면 되지 공동대표자라고 이름을 거는 게……

○김유정 위원 그런데 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진보신당 의원님이 대표발의자가 지금도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해서 민주당이나 야당 의원님들 받아서 하면 대표발의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얼마든지 대표발의자는 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동의만 얻으면.

○소위원장 이군현 그렇지요. 동의를 받으면 대표발의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유정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발의하

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발의자가 되고 계시고요, 지금도.

○홍영표 위원 그걸 의무사항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소위원장 이군현 원하면 할 수 있다?

○홍영표 위원 원하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그런데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없습니까? 필요할 때는 소수 정당이라도……

○소위원장 이군현 동의하면 할 수 있는 식으로……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하시는 게 낫고요.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괜찮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발의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때 대표발의의원을 한 분을 명시하도록 했는데, 부제를 넣고. 그런데 이걸 또 소속 정당까지 하게 되면 많아지게 되는…… 대표발의자가 조금 무의미해지는, 다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섭단체 수만큼 해도 한 두 분, 세 분 정도인데……

○소위원장 이군현 그것은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좋다고 보고……

○김성태 위원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또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군현 배려는 좋은데 그것 어떻게 조건을, 말을 잘 달아서 하면……

○홍영표 위원 아니, 저도 좀 이해를 못 했는데 이게 정당의 대표성을 요구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대표발의의원을 1인으로 하거나, 각기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의원 1인씩 공동대표발의의원을 지정하여 이를 명시할 수 있다", 원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정당 소속의 의원 1인" 이러면 이게 무슨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든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그것은 아닙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똑같이 해석이 되는 거고 그냥 거기서 공동대표발의한 분이 다른 소수 정당에도 요구를 하겠다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취지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런 취지입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면 무조건 모든 당을 다 넣어야 된다는 겁니까, 공동대표발의라는 게?

○김유정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당의 의원님들이 모여서 같이 합의해서 법안을 냈다라는 표시로 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송민순 의원님께서 내셨는데요.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대표발의를 어떤 다른 정당을 강제로 할 수는 없을 거고……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맞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의원이 동의해서……

○홍영표 위원 동의를 한다면, 다른 당에서 참여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보신당에서 우리도 하겠다 그러면 진보신당 소속의 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하면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렇지요. 어느 한 분 넣어 주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이것은 하여튼 저희 당에서는 조금…… 1석, 2석 가진 또 몇 석 가진 정당이 대표성을 가지고 했을 때 저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정안은 저는 아주 좋다고 보고요. 수정 의견은 저희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통과하기는 어렵겠는데요. 이따 정리할 때……

하여튼 저희 한나라당은 조금 반대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러면 나중에 더 논의를 하시지요. 이번에는 빼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러시지요. 시급한 법안은 아니니까, 오케이.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이것은 다음에 더 논의를 하시지요, 위원님들께서.

○김유정 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소위원장 이군현 그런데 개정안으로 가는 것 자체는 저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수정 의견은 나중에 또 다시 누가 개정안을 냈을 때 얘기고 지금 개정안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저도 오히려 이게 늘 개인적으로 불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김유정 위원 그러니까 공동대표……

○소위원장 이군현 예, 교섭단체인 경우에……

○김유정 위원 교섭단체 공동대표……

○홍영표 위원 좋습니다. 오늘 결정 안 해서 좀 그런데요.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개정안을 보면 일단 현재 상태로 보면 2명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군현 대표발의지요.

○홍영표 위원 예, 대표발의, 2명만 할 수 있는데 수정 개정안은 이게 다른 당들까지 합의가 되면 8개까지도 가능한 이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양당이 다른 당은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맞습니다.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열어 놓은 거다 이거지요.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김성태 위원 그런데 또 의미가 있는 게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소수 정당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

○홍영표 위원 아니,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한 교섭단체……

○김성태 위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원장 이군현 "할 수 있다"라고 열어 놓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소수까지 결국 법을 같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국회 교섭단체라는 지금까지의 룰에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하여튼 수정 의견은 좀 유보를 저희는……

○김유정 위원 당초 했던 개정안대로라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이군현 그것은 저희는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찬성합니다.

가결이 되나? 그런데 1명이 모자라서……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아니, 이것은 어차피 오늘 결정해 오면 나중에 초안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체회의에서 축조심사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오늘 결정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초안을 다시 만들어서……

○홍영표 위원 지금 4월에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면 언제 해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러니까 19일, 20일에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의하신 것을 저희들이 초안 작성해서 소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독회를 해서 다시 거쳐서 상임위원회에 올라갈 겁니다. 다시 또 논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개정안은 반대고 수정 의견 식으로는 곤란하다……

○김성태 위원 아니, 수정 의견은 반대고……

○소위원장 이군현 그러니까 수정 의견은 반대고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찬성한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위원님, 어떠십니까?

○김유정 위원 취지에는 수정 의견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전향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당초 이런 의견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러면 절충점을 찾아야 될 것 같으니까 개정안 정도로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홍영표 위원 저는 이렇게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다른 정당 소속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하는 것은…… 저는 수정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김성태 위원 보류예요, 보류.

○소위원장 이군현 다음 사항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한다면서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그렇지요. 지금 여기서 의결을 하지는 못해. 의결정족수가 안 돼.

○김유정 위원 일단 오늘 개정안에 찬성을 하면 다음에……

○홍영표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찬성하는 거네요.

○김유정 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세요.

○홍영표 위원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10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국회법 82조의2에 위원회는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위원회는.

그런데 개정안에 진영 의원님께서는 현행 위원회의 법률안 입법예고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무조건 입법예고를 하도록……

또 그 밑에 보시면 권영진 의원님, 주성영 의

원님은 의원은 발의하려는 법률안을 국회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했고요.

또 이성헌 의원님께서는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할 경우 입법예고 의무를 부여하되, 대상 법률안을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만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의견 제시한 게 있는데요. 의원은 법률안 발의 전에 입법예고 실시를 의무화시키고, 7일 이상 30일 이내의 실시기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단축이라든가 생략도 가능하도록 해놨고요. 의장님께서는 19대부터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님들 법률안 발의할 때 입법예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자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많이 계셨었고, 논의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유정 위원 그러니까 진영 의원님안은 입법예고 주체가 바뀌는 거지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입법예고하는 것을 위원장 명의로 전환한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그리고 권영진, 주성영, 이성헌 또 의장님 의견 제시는 입법예고의 주체가 의원이 되는 겁니다.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유정 위원 진영 의원님안의 위원장으로 전환하는 거요, 이것은 만약에 주체를 위원장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야 간사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전제조건을 달면 저는 찬성이고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러면 의원님들이 입법예고하시는 것은?

○김유정 위원 저는 의원들 입법예고는 반대인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입법예고 의무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도 이익단체나 그 관련된 단체들, 국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익단체들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매우 커지지요, 의원입법의 경우 입법예고를 의무화하면. 그 저항 때문에 발의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반대이고요.

'위원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여야 간사 합의하에 한다' 이런 조건을 단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진영 의원님안에?

○김유정 위원 진영 의원님안에 대해서는요.

의원 입법예고 의무화하면 의원들 절대로 이거 발의 못 할 겁니다. 안건이 건건이 부딪힐 거고요. 저항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입법예고하는 걸……

○김유정 위원 그 정도면…… 예.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진영 의원님안에?

○김유정 위원 예.

○소위원장 이군현 이성헌 의원님의 대상 법률안은 국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안하고 아닌 것하고 구분하기 어려울 걸요.

○김유정 위원 그럼요.

○소위원장 이군현 다 관계있어요.

○김유정 위원 다 건건이 관련이 있고요. 예상치 못한 반발도 오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들.

○김성태 위원 구속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홍영표 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혁 의원님께서는 결산에 대해서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예결위에서는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 공청회 개최 의무화는 위원님들께서……

○홍영표 위원 동의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산도 해야 됩니다.

○김유정 위원 찬성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공청회를 하면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한 그런……

○홍영표 위원 아니, 논쟁이 있더라도 공개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결국은 우리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거치자는 거지요. 사실 기금 운용은 정말 지금까지 보면……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가장 큰 책무가 예결산 심사인데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만으로 그것을 국

회의원이 수용하고 안 하고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는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소위원장 이군현 이것 도입할 필요가 있나? 감사원의 감사가 있고 예결위에서 하면 결국 잘못한 것 징계조치하는 건데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갖다 쓴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징계를……

○김성태 위원 정치논쟁으로 간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데…….

○홍영표 위원 시끄러운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예산안이나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예산안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안하고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 심지어는 이해당사자들까지 공청회를 하는 건데, 공청회는 이것을 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지금 예결위에서 하는 정도 가지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하는 것도 보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이군현 그게 있잖아요? 몇조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홍영표 위원 작년에 제가 결산을 해 보니까, 결산소위 제가 4일 했거든요. 4일 하면서 이것을 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작년에 결산하면서 국회가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전문가들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청회 하는 거지요. 몇 명이 앉아 가지고 4일 동안 하는 것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여야 위원님들 전부 다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정 위원 12페이지에 '예결위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 이 의견을……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결위에 의견을 한번 수렴해 봤는데 '예결위 의결로 생략할 수 있음' 이런 예외규정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유정 위원 예외규정이 있으면 도입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홍영표 위원 그렇지요. 예결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어떤 해에 특별히 정말 이 부분을 깊게 봐야 되겠다, 예결위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우리가 전부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소위원장 이군현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도 같아요.

○김유정 위원 그렇게 예외규정을 달고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홍영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예외규정을 두고 하는 걸로.

○소위원장 이군현 좋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그렇게 성안을 한번, 초안을 만들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의 84조에 보시면 현행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또는 징계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주영 의원님께서 '결산 시정요구사항 미조치 등에 대한 국무총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재정부에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총리의 소명'을 그냥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소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총리가 소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래서 재정부도 이것은 수용 입장입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총리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작년에 국정감사나 작년 정기국회 때 보니까 해 놓고 정말 흐지부지 하는 게 너무 많고요.

국무총리 정도가 사실 국정에 대한 지휘감독권이나 국정통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와서 모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작년에도 그것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여당 위원님들도 똑같잖아요.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막 넘어가니까 예결위에 다시 넘어와 가지고 이야기하면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총리가……

○소위원장 이군현 좋습니다. 소명요구 했는데 안 해 버리면 그만이니까……

○홍영표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벌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정부가 책임 있게 처리를 해야지요.

○김성태 위원 동의합니다.

○김유정 위원 이주영 의원님 안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은 지금 서류제출 요구인데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128조2항에 보시면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명순 의원님께서는 서류제출을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서 의무화하도록 하고 다만 제출 시한 또는 비밀유지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이 2004년 8월부터 운영 중인데 지금 사용자 등록기관이 611개 정도 기관이 있고 실제 이용기관은 한 450개고요, 그리고 제출 비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한 55%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이것은 아직은 안 돼요.

○소위원장 이군현 기밀이 노출되지 않겠어요?

○김성태 위원 동의합니다.

○홍영표 위원 솔직히 우리가 갖다 달라는 자료도 진짜 10분의 1도 안 갖다 주는 행정부인데 '어디다 올려놨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김유정 위원 그럼요. 개별 요구하는 자료들 이런 것 하나도 받아 보기 어려워요.

○김성태 위원 보류하시지요, 보류.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알았습니다.

○김유정 위원 이것은 원래대로, 현행대로……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소위원장 이군현 요구 자체가 기밀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16쪽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공직선거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법명만 바꾸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좋네요. 줄이는 게 좋겠네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인데요, 19쪽이 되겠습니다. 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으로 만들었는데 이용섭 의원님, 권영진 의원님 또 의장님의 의견 제시 사항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해당기관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제도개선, 예산조정, 시정, 변상, 관계자 문책 등 시정요구사항을 세분화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결산 심사결과도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이렇게 구체화시켜 놨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국회법 제84조에 되어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84조는 결산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홍영표 위원 이것은 결산사항이니까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국정감사·조사 결과에 대해서……

○김유정 위원 결산에 대해서는 84조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김유정 위원 국정감사 결과하고 조사 결과 이런 것에 대한……

○소위원장 이군현 국감 때도?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국감 때도 구체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홍영표 위원 솔직히 저는 이것을,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관계자 문책……

○김성태 위원 이것은 통과합시다.

○소위원장 이군현 좋습니다.

○홍영표 위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는 더 강화하고 싶은 게 작년에도 보면 저희 환노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여야 위원들이 막 분노하면서 관계자 문책 요구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조사한다더니 나중에 가서 그냥 기관 경고나 아주 경미한

걸로 해서 끝내 버렸어요.

그때 사실 우리 상임위 때 분위기는 그야말로 해임을 요구한 건데 나중에 갔더니 정말 한 세 달 지나 가지고는 와서 조사 결과 그냥 흐지부지 하고 끝내 버렸거든요. 정말 이거는 좀……

○김유정 위원 그러면 '시정·결산, 특히 관계자 문책 등' 이렇게 할까요?

○홍영표 위원 관계자 문책에 이걸 좀……

○김유정 위원 이거 세분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리고 지금 21쪽하고 다음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또 강명순 의원님께서 아까 서류 제출에 대해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걸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자, 그동안 여러 가지를 다 뤘기 때문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간략히 종합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해서 초안을 다시 만들어서 드리고 독해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표 위원 지금 하나 더 남은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하나 간략한 것 남아 있습니다.

국회법 등 의장의견 제시 설명자료입니다.

상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4.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에 대한 의장의견 제시의 건 관련 보고

(15시06분)

○소위원장 이군현 의사일정 제4항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에 대한 의장의견 제시의 건 관련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장 자문기구인 의정활동지원강화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 중에서 국회법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시된 사항입니다.

의장의견 제시의 건은 4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제출되어 일정 관계상 전체회의에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나 운영위 전체 위원님들께 관련 사항은 공지됐습니다.

우리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해서 채택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안을 성안할 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보고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후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등 의장의견 제시 설명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이거는 조금 전에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오늘 여기서 채택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위원님, 부분적으로 채택을 해서 집어넣자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5개니까 내 생각에는 15분 정도면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것.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은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현재도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부분 심사를 하기 위해서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의무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설소위원회는 폐회 중 월 1회 개회 의무화시키고 이것은 개정하시게 되면 제19대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영표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소위 간의 영역 배분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분이 불명확해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홍영표 위원 그런데 소위를 구성할 때 소위의 분명한 의무화 이런 것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설소위원회가 1991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2000년도에 상설소위를 의무화했다가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상설소위 설치를 임의화했습니다.

○사무차장 구희권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무차장입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예.

○사무차장 구희권 지금 이 상설소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각 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같으면 외교상설소위원회, 통일상설소위원회, 이렇게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고 또 향후에 상설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설소위의 월 1회 개최 의무화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이걸 저희가 19대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지금 현행도 필요할 때 설치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의무화해 주면……

○사무차장 구희권 예,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성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필요시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차장 구희권 그래서 이걸 좀 "개회한다"라고 해서 의무규정으로 해 놓으면 보다 충실하게 지금 현행 규정이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홍영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환노위인데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환경부하고 노동부하고 너무 다릅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다르지요.

○홍영표 위원 너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상설소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전체회의를 하더라도 좀 따로 할 필요도 있고요.

이 외에도 무슨, 이게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소위를 또 특별히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그건 얼마든지 둘 수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경우도 요즘에 무슨 산업재해소위원회, 이런 걸 좀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소위원회가 좀 활성화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시국회 할 때나 그냥 잠깐 전체회의 한번 하고 끝나는 것보다……

○김성태 위원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

○홍영표 위원 예, 전문적으로 좀 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는 찬성합니다.

○김성태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이건 일단 조금 유보를 하면 어떨까요?

○김유정 위원 예, 조금 유보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이군현 왜냐하면 이게 작은 권력싸움으로, 배분싸움으로 좀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소위마다 예산도 다루게 되고 법안도 다루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보류하셨으면 보류합시다.

○소위원장 이군현 예, 조금 보류를 하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건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도 갈라졌고……

○소위원장 이군현 그다음에 청문회제도.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3쪽이 되겠습니다.

청문회제도입니다.

3쪽에 보시면 두 번째, 지금 청문회는 위원회에서만 개최할 수 있는데요.

소위원회에서도 청문회 실시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 요건을 의결해서,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도록 하고 청문회 사전조사요원 위촉대상을 전문가에서 사무처·예산처·조사처 소속 직원이라든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및 전문가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효율적으로 청문회 운영상……

○김유정 위원 예, 저도 찬성입니다.

○홍영표 위원 더 확대하는 것 좋고요.

○소위원장 이군현 활성화 차원에서……

○김성태 위원 예, 동의합니다.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5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청문 대상 공직 확대"인데요.

국회법하고 인사청문회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공직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데 금융위, 국가인권위, 공정위 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 4인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57인이고요.

그리고 특히 또 김무성 대표님께서는, 위원장님께서는 합참의장을 논의할 때 좀 대상에서 삭제하는 건 어떠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유정 위원 이유는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아마 이제 군 쪽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홍영표 위원 어디를 배제하자고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더니 김무성 위원장님께서는 "합참의장을 지금 청문회 대상인데 뺐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 좀 드려 봐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군의 문민화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합참의장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지요, 그건.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말씀이 계셨다는……

○김성태 위원 저는 공직을 확대하는 부분, 근본적으로 한국은행총재하고 금융당국 위원장들, 저는 확대하는 것 동의합니다.

○김유정 위원 예, 저도 이 4명, 이 4개 기관……

○홍영표 위원 플러스해서 합참의장.

○김유정 위원 아니, 합참의장은 지금 현재 있는데 빼는 게 좋겠다라는 김무성 대표님……

○홍영표 위원 아, 빼자고?

아니, 해야 된다고.

지금 군의 문민화시대를 얘기하는데……

○김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건 빼면 안 된다는 얘기시고요.

○소위원장 이군현 지금 뭐 이렇게 확대하는 것만 좋은 건가, 이렇게……

○김유정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하지요.

○홍영표 위원 아니, 솔직히 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건 전부 다 장관급이고 그 위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 빼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 데려다가 물어보는 건 해야지. 인권위원회도 똑같아요.

○김유정 위원 아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과위 이번에 발족했는데요.

그게 장관급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데……

○소위원장 이군현 이건 국회의장께서 의견을 이렇게 주신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김유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태 위원님?

○홍영표 위원 많이 하면 좋……

국회가 진짜 최소한도의……

○김유정 위원 국과위원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김성태 위원 나는 조금 전에 동의했어요.

○김유정 위원 동의하셨어요?

○조영택 위원 확대하는 데 동의.

○소위원장 이군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이 사람만 늘릴 건지 더 늘릴 건지, 인사청문회 관련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새로 검토하는 게 어때요?

○김성태 위원 그것도, 하긴 여기에는 노사정위원장 같은 사람들도 또 포함, 그렇게 치면 또 검토대상에 포함되긴 되어야 돼요.

○김유정 위원 누구요?

○김성태 위원 노사정위원장이요.

○홍영표 위원 기본적으로 장관급은 다 해야 돼요.

○김성태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에 저는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새롭게 청문회 대상을……

○홍영표 위원 미국의회 봐요. 다 하는데……

○김유정 위원 예, 새롭게 검토하면서 방향은 가급적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관급은 거의 다 하는……

국과위원장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김성태 위원 소수의견을 그렇게 회의록에 다 다시고……

○소위원장 이군현 하면 장관급, 누구는 빼고 누구는 또 안 하고 하면……

○홍영표 위원 장관급은 사실은 다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국회가 사실 장관을 불러다가 그때 그 사람의 철학이나 무슨 정책이나, 이런 유일한 기회인데,

자질의 문제인데……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하시지요.

다음에 또 논의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김성태 위원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위원장 이군현 나는 종합적으로 지금 장관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청문회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안 할 거면 그 신상에 대한 걸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책만 묻는다든지 그래야지 나중에 낙마하면서 그냥 온 난도질하고 또 시킬 거면서 온 상처투성이, 그리고 권위를 실추해 가지고 기관장이 누더기가 된다면 앉혀 봤자 그 국민에게도 그렇고 그 장관이나 장관급을 그런 식으로 해서 임명하는 건 나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안 시키면 몰라도.

○홍영표 위원 아니, 자질이 없는 사람을 안 시켜야지요. 추천을 안 해야지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추천하니까 그런 거예요.

○소위원장 이군현 총리나 감사원장 외에는 그것 반대해도 지금 임명권자인 그 국가원수가 지금 임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임명이 된 사람은 안 시키든지 해야지.

○홍영표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국회가 사실은 그 권한을 강화해야 됩니다.

해서 자질이 없는데 대통령이 뭐……

○소위원장 이군현 이건 총체적으로 전체 대상과 방법에, 두 가지 크게,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저는 종합적인 방안을 새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아주 청문회 제도는 많아요.

○김성태 위원 예, 더 확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김유정 위원 그 방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소위원장 이군현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봐요.

○김성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든지 사실 정부 부처를 대표하는 장인데 좀 지혜롭게 방안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강화해야지요. 강화해야 되니까 종합적인 방안을 하는 걸……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유정 위원 모든 상임위 소관 장관들 빼고 장관급들은 쭉 한번 보셔 가지고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한번 나중에 검토하실……

○소위원장 이군현 그다음.

다음 "의원발의 법률안 입법예고 의무화"는 아까 이것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빼고……

○김유정 위원 예, 이건 반대로……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은 "의원발의 법률안 입법예고 의무화"는 안 하시는 걸로 했고요.

국회법 개정 시에 입법예고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리고 10쪽인데요.

10쪽은 "예결위의 소관 상임위 동의요청 사항 추가"인데요.

현재는 예결위가 각 상임위원회 삭감 세출예산을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할 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플러스해서 예결위가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추가를 해서 동의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유에 관해서는 예결위원장께서도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예결위원회 심사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이건 곤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상임위에서 나눠 먹기식 예산 또 우리 뭐 다 여기 예결위 위원 해 보신 분 여러분 계시지만, 저도 계수조정소위까지 해 보면 그 동의 안 받으면 소위 쪽지예산 넣어 가지고 상임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완전히 그건 불필요한 예산증액을 막 늘릴 수 있지.

○김성태 위원 예, 동의합니다.

예결위 기능 자체가 또 축소될 수도……

○소위원장 이군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예산 배분을 훼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김성태 위원 예, 맞아요.

동의합니다.

○사무차장 구희권 위원장님, 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군현 그리고 필요하면 지금도 상임위 위원장이 "나한테 위임해 달라", 위임권을 받아 놓으면 상임위를 전체 안 열고도 받아 놓으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논하고 해야지 그걸 없애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사무차장 구희권 아니, 없애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개정 의견의 근본 취지는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는 예산안의 예비심사기능을 좀 실질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의견은 예결위에서 반영이 되는데 증액된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증액 부분……

○소위원장 이군현 아니지요, 증액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판단해서 넣을 수 있지.

○사무차장 구희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그 동의만 받아 오면 되잖아요.

○사무차장 구희권 그런데 상임위 단계에서 동의한 내용이 예결위 단계에서 존중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김유정 위원 다반사지요, 사실은.

○소위원장 이군현 다반사지. 다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거의 상임위마다, 교과위도 17대 보면 3조 정도 증액이 되어서 넘어오거든요. 그거 다 받아들였다면 국가 예산이……

○사무차장 구희권 그래서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의 큰 틀 한계를 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증액과 감액을 조정한 의견, 이걸 예결위에 보내고 예결위는 그러한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개정 의견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가 결의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번복·축소·조정되지 않도록 상임위 안을 좀 존중하자는 그런 취지라는 거지요?

○사무차장 구희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그러면 예결위가 상당히 무력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차장 구희권 예결위 측에서는 그걸 걱정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계수조정소위 몇 명이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예결위원 50명도 최종 단계에 가면 그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성태 위원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의 실효성이라든지 또 책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요. 많이 나온 거는……

○홍영표 위원 지금 우리 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수조정소위 4명이서, 만날 보십시오. 다 나눠 먹기 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심의 죽으라고 해놔도 욕 다 먹는데, 이걸 어떻게 강화를 해요? 이건 상임위의 예산심의 권한을 사실 강화해야 돼요,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소위원장 이군현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할 게 국가 예산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배분화·적정화를 예결위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선의로 해석하면, 그 사람들을 안 좋게 보니까……

○홍영표 위원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4명이서 속닥속닥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 다 무력화시켜 버리고 자기들 것 몇 개씩 지역사업 끼워 넣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그걸 개선해야지요. 그것까지 종합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해야지 지금 그나마 상임위의 그런 권한마저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면 이건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의 계수조정소위는요, 이거는 없애야 됩니다. 정말 나눠 먹기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심의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보면 이 국가 예산의 적정한 배분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것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게 소위입니다. 계수조정소위입니다. 계속해서 매년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 예결위의 어떤 권한과 역할은 조금 위축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상임위는……

○소위원장 이군현 그런데 저도 상임위 예산소위원장도 해 봤지만, 17대 때 상임위 예산소위원장을 해 봤지만 상임위에서는 자기 이해관계 집단이 해 달라고 하는 거를 못 자르거든요. 전부 증액된다고, 거기서 실제. 자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랐다가 표 날아가고, 당장 교과위 같으면 전부 아는 각 대학들에서, 국립대학에서

'이군현이가 깎았다', '누가 깎았다' 해 가지고 그것 깎을 수 있겠어요? 전부 증액된다고.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그러거든, 상임위에서. 그 문제가 있다고.

○사무차장 구희권 조금 더 설명을 올리면, 이제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조정 범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증액할 부분과 감액할 부분을 상임위원회가 조정하는 권한은 갖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서 예결위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항을 만든 겁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나 와꾸가, 예산 와꾸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192조, 200조 조금 안 되게 세입, 그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예결위가 한다고요. 세입 구조를 먼저, 얼마 세금이 들어올 건지를 확정하잖아요. 대략 우리가,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 대략 200조 조금 안 되게 국가 세금 기초하에 연기금 한 100조 해 가지고 한 300조 익년도, 다음 연도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정부 부처마다 대략 '올해는 예산규모를 이 정도로 짜라' 하고 틀을 준다고요. 틀을 주는데, 상임위에서는 자기네 산하에 있는 기관들의 예산 들어온 것을 못 잘라낸다고. 실제 상임위 해 보시면 못 잘라내고 전부, 교과위 같으면 한 3조…… 내가 지금 7년째인데 7년을 보니까 한 3조 정도 매년 불어 가지고 혹이 붙어 가지고 예결위로 넘어와요. 그것을 예결위에서 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에서 좀 집어넣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상임위에서 쳐낼 수 없는 불필요한 예산의 혹 덩어리를 예결위에서 쳐 주는 거거든요, 국가 전체예산 배분 차원에서 보고.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결위가 생긴 거거든요.

○사무차장 구희권 예결위의 기능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바뀐 개정 의견에서는 상임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는 총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예결위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전제와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상임위하고 협의를 하도록 예결위를 변경하는, 그것 강화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위원님, 의견을 한번 모아 보시지요. 예결위원님들은 싫어하실 거고…… 그래서 한번 의견을 모아 보시지요.

○홍영표 위원 저 예결위원이에요.

○소위원장 이군현 제가 한 말씀만 이렇게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17대에도 얘기를 해 보고 18대 때도 얘기를 해 봤는데……

○홍영표 위원 다 껍데기입니다, 이게.

○김유정 위원 깨어 있는 예결위원이시군요.

○소위원장 이군현 상임위에서 삭감한 만큼 증액할 수 있는데 삭감을 못 해 낸다니까, 상임위에서.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규정을 같이 강화를 하면서 제기를 하든가요.

○사무차장 구희권 그래서 문안을……

○소위원장 이군현 삭감이 잘 안 된다, 현실적으로.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면 거기서 통과를 시켰어도 예결위에서 심의를 못 하도록 만든다든가……

○소위원장 이군현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192조, 대략 200조 조금 안 되게 세입 구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는 건데, 예결위 위원들이 들어오면. 문제는 거기에 맞춰서 쳐내 줘야 되는데 삭감을 못 한다고. 그것을 예결위에서 하는 겁니다.

○사무차장 구희권 자꾸 제가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개정의견 보시면 각 항의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증액을 어떤 부분에서 하려면 그만큼을 다른 쪽에서 깎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식 예산 심의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조정된 상임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예결위도 존중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조영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견이 국회의장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사무차장 구희권 예, 그렇습니다.

○조영택 위원 이제 이런 데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처럼, 현행과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가지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를 못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어

떻게 더 강화하느냐 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연중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죽, 수요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부터 연중 소관 상임위원회가 책임성을 가지고 감시를 하면 지금처럼, 지금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책임한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발되는 것이거든요. 만일에 책임이 부여되면 적절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의 예산심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이것만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하는 게 어떠냐, 상임위화해 가지고 연중 관련 부처에서, 1년 중 소관 기관에서 요구한 것은 죽 추적을 하면서, 연초부터 추적을 하면서 예산심의를 해 나가야 되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11월 초순 되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서 가지고 오면 예결특위 위원들 정책질의 몇 번하고 나머지 그냥 한 10여 명의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막 '이것 되네, 안 되네' 하다가 막판에 한 이틀 동안은 양당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셋이서 주고받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들고 튀어 버리거나 도망가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우리 국회가 아주 희화화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정권적 이런 측면을 떠나서 우리 국회의 본연의 기능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로 상임위를 차라리, 상임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예결특위를 정보위원회나 우리 운영위원회처럼 상설 상임위원회화 해 가지고 연중 계속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 나가면 지금처럼 졸속, 뭐 날치기, 이런 것은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차장 구희권 예, 그렇습니다.

○조영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따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행 방식을 놔두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면 서로 일장일단이 있어서 아무래도 끝이 안 나니까요.

○소위원장 이군현 아까 인사청문회제도 개선도 종합적으로 그 대상과 절차 두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넘겼는데 이 문제도 예결위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이렇게 단발적으로 고치는 것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어때요, 제도 개선을?

○조영택 위원 아까 인사청문회 범위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종합……

○소위원장 이군현 예, 종합 개선방향……

○조영택 위원 그러니까 인사청문 대상 공직 확대 문제는 지금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소위원장 이군현 예, 그렇게 일단.

○김유정 위원 예.

○조영택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같이. 서로 또……

○소위원장 이군현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조영택 위원 사실이야.

○김유정 위원 사실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국회 중 국정감사 실시인데요, 현재는 국정감사를 정기회 중에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견은 국정감사를 임시회 기간에 20일간 실시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계획서를 매년 첫 임시회에서 정해서 통지하도록 하고 감사계획서 변경은 하는데 감사일 7일 전까지 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홍영표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국회 동안에 국정감사 하자는 겁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면 정기국회 때 또 하고?

○홍영표 위원 정기국회 때 20일, 임시국회 때 20일.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아닙니다.

○조영택 위원 정기국회 때는 안 하는 거야.

○홍영표 위원 아, 상설화하자는……

○김유정 위원 정기국회 때 안 한다는 거지요.

○홍영표 위원 아니, 정기국회 때도 하고 이때도 해야지.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래서 정기회 기간 동안에 동시적으로 예산도 들어오고 법안도 있고 하니까……

○홍영표 위원 그러면 정기국회는 없어져요? 정기국회 때 안 하면 뭐야.

○김유정 위원 임시국회 중에……

○소위원장 이군현 그런데 국감 때도 한번 싸우는데 임시국회 때마다 전반기 짝수 달에, 후반기도…… 이것 임시국회 운영상 파행의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서로 공방하고.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싸운다고 하는데 임시국회 때마다 이것 싸움 날 것 같은데?

○홍영표 위원 아닙니다. 국회는 원래 싸워야 됩니다. 국회는 싸우는 데고 국회가 여야 간에 의견이 다르고 또 우리가 의견이 꼭 같아야 될 필요는……

○소위원장 이군현 국감을 몰아서……

○홍영표 위원 아니, 저는 진짜 국감 해 보면, 국감 20일 동안에 저희 상임위 산하기관만 해도 한 50개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제대로 국감 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군현 임시회마다 국감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시국회 때마다 필요할 때, 여기서 지금 20일 범위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6월에 맥시멈 7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고. 할 수 있도록만 해 놓고.

○사무차장 구희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국정감사제도는 정기국회 기간에 동시에 여러 위원회가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의에 충실할 수 있고, 2월·4월·6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20일 동안 나누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일씩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좀 방법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당초에 저희가 안을 마련할 때는 2월이든 4월이든 6월이든 어느 임시회 기간을 정해서,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20일 동안 실시함으로써 상임위원회 간에 한군데로 몰리는 그런 현상을 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임시국회마다 국감을 실시하게 되면 국회가 국민의 눈에 계속해서 충돌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만 국정감사를 보다 충실하게 시행하자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개정의견이 보다 개선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일정기간 동안 있지 않고 수시로 되면 우리가, 지금 상설위 말고 운영위도 그렇고 또 뭡니까, 운영위처럼 상설 아니고 하는 위원회가? 정보위 또 여가위 이런 위원회도 소집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국감 하니까 빠지고……

그것을 같은 기간 동안에 정한다고 해서 엉성하게 엉터리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상임위별로 가서 하는 것이니까? 이 상임위원이 저 상임위에 가서 하고 그렇다면 몰라도 기간을 정해 놓고 있다고 해서…… 상임위 위원이 자기가 소속된 데가 다른데 그것 때문에 부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들이 기간이 짧다든지 하면 더 늘린다든지 하면 되지 어느 일정기간에 하기 때문에 국감이 부실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위원마다 자기 소속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략 11일쯤에 하잖아요. 10월 11일쯤에 하는데 국감 기간을 좀더 필요에 따라서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홍영표 위원 차장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면, 사실은 1년 동안 각 부처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4월에 하는 것도 좀…… 예를 들어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것은 동의하기 힘들고, 저는 잘못 이해를 했는데……

그다음에 정기국회에는 법률 심사나 예결산 심의를 충실하게 하자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예결산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결위도 사실 연간 상설화해서 하자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차라리 보완을 하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예결위를 연중 상설화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게 하거나, 이것과 연동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정기국회에서 빼자는 것은 예산과 법률 심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예결위를 연중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상설화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고민해야지, 제가 볼 때 국정감사를 완전히 정기국회 때는 안 하고 상임위가 2·4·6월에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2월에 할 수도 있지만 4월에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국정 중간에 하니까 특정사안은 할 수 있겠지요. 현안에 대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은 잘 안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군현 그렇기도 하고요,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한 톨이라도 아껴 썼는가, 안 아껴 썼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국가예산을 쓰는 기관에서, 정부 부처를 포함해서 국가예산을 쓰는 기관에서 제대로 쓴다면 국정감사가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것인데 국정감사를 우리가 임시국회 중에……

임시국회 중에 한다는 것은 정기국회 때는 국정감사를 안 하고 임시국회 때 한다……

○사무차장 구희권 예,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국정감사 기간이 9월 10일부터 2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택 위원 이게 일리는 있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전 상임위가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오히려 정부·여당으로서도 정치적으로 부담돼요. 그래 가지고 그게 마치 꼭 정치 경쟁의 장처럼 되고, 정기국회가 또 정치선전장으로 변질되는 또 하나의 단초도 될 수도 있거든.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것은 전년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연도 중간에 그 해에는 예산 한참 집행하고 있는데 그 해의 것을 가지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본래가 원칙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그 기관의 형편에 의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기국회에는 법안이나 예산이나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시키고 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사무차장 구희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시기를 정기국회 때에서 임시국회로 옮기자, 그 말입니까?

○조영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요.

○소위원장 이군현 대개 3주, 20일 하잖아요.

○조영택 위원 21일입니다, 21일.

○소위원장 이군현 21일을 임시국회 때로 옮긴다? 한 번 하는데, 임시국회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2·4·6 세 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사무차장 구희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

○조영택 위원 20일 범위에서, 상임위별로 그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20일 범위 내에서 연초에 그 해의 국정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국정감사를 하자, 지금 이런 얘기거든.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사무차장 구희권 그래서 2월 달에 할 수도 있고 3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조영택 위원 그리고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만날 20일간 수십 개 기관을 정해 놓고 나면 하루 종일 하고 밤중에 또 다음날 기관 것 받아 가지고 또 하고 이게 무슨 보따리장사처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딱 연중에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몇 기관씩 임시국회 때마다……

○사무차장 구희권 그것은 아닙니다.

○조영택 위원 좋다, 이 말이야.

아니, 한 임시국회에 꼭 다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택 위원 좋아, 그러면 그렇더라도 뭐 6월 임시국회가 되었든지 상임위별로 다를 거 아니야?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맞습니다.

○조영택 위원 상임위별로 6월 임시국회가 되었든지 어디에서 우리 차분하게 국정감사를 하자, 그것도 우리가 고려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그것을 내가 확실히 물어보고 싶은데 임시국회로 옮겨서 일정, 기간 다 같이 정하는 거냐, 아니면 상임위별로 다르게 하는 거냐……

○사무차장 구희권 상임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컨대 지금 이제 결산이……

○소위원장 이군현 옮기는 것은 좋은데 카메라가 전부 다 그리로 가 가지고……

○이한성 위원 그게 문제점은 각 임시국회마다 본회의가 있을 텐데 본회의가 지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무차장 구희권 본회의를 피한 상임위 활동 기간 동안에……

○소위원장 이군현 이론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상임위별로 하면 완전히 산만해질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 오는 게 아니라 국감 하는 데로 갈 것 아니에요?

○김유정 위원 차라리 정기국회 때 국감 기간을

조금 기간을 늘리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아지고요, 이것은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조영택 위원 정기국회 일자는 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늘리면 또 다른 의사일정이 침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이군현 정기국회 때 하던 것을 임시국회로 옮겨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별로 한다면 완전히 이게……

○조영택 위원 대개 이러지 않겠어요?

보면 2월 국회 때 계획 수립해 가지고 보통 6월 국회 때 국정감사 하지 않을까?

○사무차장 구희권 예,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택 위원 그래, 6월 국회 때 국정감사 하고, 그래 가지고 또 두 달 준비해 가지고 9월부터 정기국회 하고 그게 좋지 않나?

○소위원장 이군현 그것을 명확하게 하면 그것은 정기국회 때 너무 복잡하니까 6월로 옮긴다든지……

○홍영표 위원 일단 감사기간을 기본적으로 늘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심의를 작년도 것을 하니까 이렇게 미리 하면 안 좋지 않냐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그 다음 해 예산안 심의할 때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지요, 장단점이 있고.

저는 그래서 국정감사는 늘리되 저는 예결위를 상설화하면서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조영택 위원 그런데 그러신다면, 그런 취지라면 적어도 6월 국회나 4월 국회 때는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 예산 편성이 5월, 6월에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 가지고 8월까지 정부 내에서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이미 10월 달에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정부가 예산을 다 짜 가지고 오니까 수정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에 국정감사 해 가지고 과거에 집행이 잘 안 되었거나 비효율적인 것 지적하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면 안 된다 하고 딱 못도 박고, 좋은데 그래요?

○소위원장 이군현 4월쯤으로 옮기는 것은 저는 상당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상임위별로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사무차장 구희권 당초에 이제……

○김유정 위원 겸임 상임위는 그러면 국감 안 해도 되는 거겠네요? 어떻게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같이 3개 하고 있는 사람은 국감을 어떻게 하지요?

○사무차장 구희권 겸임 상임위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처럼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국감 기간을 일정하게 픽스(fix) 안 해 놓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철저하게 하자는 그것에는 저도 동의해요.

○김유정 위원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조영택 위원 예산안이 9월에 오면 '이거 이렇게 왜 안 하느냐' 하고 지적을 하지.

○소위원장 이군현 그렇지, 그것은 좋아요.

그러려면 한 4월쯤, 2·4·6이니까 임시국회로 옮기고 기간은 20일 정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문방위 보니까 기관이 많아 가지고, 매년 하니까 그것을 격년으로 해 가지고 줄여서, 피감기관을 줄여 주면, 그러면 알차게 할 수 있거든요. 20일도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줄여 주면. 왜냐? 자기가 그 상임위에 있다 하면 그 내용을 거의 알거든요, 대충.

그래서 피감기관을 격년제로 돌려 가면서 하면 굉장히 알차게 할 수 있는데 매년 똑같은 것을, 교과부 예를 들면 16개 시·도교육청을 매년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그냥 전국 돌기 바쁜 거야. 완전히 하루에 세 기관씩, 전북 갔다가 울산교육청 갔다가 전북교육청 갔다가, 하루에 그런다고.

○사무차장 구희권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기국회의 일정이 촉박하게 돌아가는 문제점도 있고, 또 동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그것은 좋아요. 옮기는 것은 상당히……

○사무차장 구희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기관이 많은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년의 시간 범위를 두고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논의하실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개정의견으로 제시한 그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임시회 기간 중이라고 한 것을, 예를 들어서 결산 자료가 다 준비된 6월 임시국회 기간에 실시

한다라든가, 또는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 기간을 좀 늘린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개정안의 취지가 다소 많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정부 부처별로 6월이면 산하기관 예산이 다 취합되어서 방향틀이, 골격이 짜이잖아요? 7일경에 기재부로 넘기고 7월에 기재부에서 작업해 가지고 9월 2일 날 법에 의해서 국회 열리니까 8월 말까지는 다 사실 책이 제공이 되어 버린다고.

6월이면 작년에 잘못한 것 지적하고 좀 벌 줄 때는, 예산을 깎을 때는 깎고 하기가 조금 늦어질 수가 있고, 전년도 것 감사하는 것이니까 전반기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 4월 국회 즈음에 옮기면 9월 국회는 너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사무차장 구희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그러나 상임위별로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혼선이 올 것 같고……

○조영택 위원 4월 달에 해 봅시다.

○소위원장 이군현 4월쯤의 임시국회로 옮기는 것은 결국 국정감사를 더욱 충실히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당도 해 봤고 하기 때문에, 누가 야당 되고 여당 되고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 의논하고, 의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을 만들어서.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소위원장 이군현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5.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계속)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7)(계속)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발의)(계속)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천 의원 발의)(계속)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래 의원 발의)(계속)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
27. **국회의 입법질서유지를 위한 특별법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29. **국회내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특별법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국회 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5시48분)

○**소위원장 이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1항까지 27건의 국회 안건처리 절차 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처리 절차 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안건은 다음에 논의를 하지요, 오늘은 못 할 것 같은데.

○**김유정 위원** 한나라당 위원님도 아무도 안 계시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됩니까? 하시지요.

(웃음소리)

○**조영택 위원** 다음에 합시다.

○**소위원장 이군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합의된 사항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성안하여 다음 번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 소위원회는 언제쯤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

6월?

○**김유정 위원** 6월이면 이 멤버가 아니겠군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계시는 동안에 의결하고 하는데……

19일 날 저희들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있거든요.

○**김유정 위원** 19일 날 운영위가 잡혔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오전 10시부터.

그래서 전체회의 끝나고 딱 앉으시면 한 10분이면 되거든요.

○**조영택 위원** 뭐를 하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오늘 합의된 사항을 초안해서 성안한 것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소위원장 이군현** 우리가 4월 회의를 마치고 5월 2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할 것으로 오늘 최고회의에서 대충 결정이 됐거든요.

○**김유정 위원** 그러면 이번 달을 넘기면 어려운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그래서 19일 날 전체회의 끝나고 나서 한 10분만 해 주시면 20일 날 회의할 때 처리하게끔……

○**김유정 위원** 전체회의 하기 전에 하면 어때요? 끝나고 나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것도 좋습니다. 10시부터니까 9시부터 하시든지, 9시 반부터……

○**소위원장 이군현** 9시는 대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하고 원내대책회의를 하기 때문에……

○**김유정 위원** 그러니까 18일, 아니면 19일 날 운영위 전에 잠깐 모이시는 것은 어떠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19일 날 잠깐 모이셔도……

○**조영택 위원** 몇 시에 한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19일 날은 10시거든요.

○**소위원장 이군현** 운영위 전에 이것을 처리하고 운영위로 가야 되겠지요? 10시로 소집은 해놨는데……

○**김유정 위원** 예,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끝나면 어렵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9시 반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모이셔서 하시면 제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설명만 죽 드리겠습니다.

○**조영택 위원** 그래요, 그럽시다.

○**김유정 위원** 그러시지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군현** 다음 번 소위는 19일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성태 김유정 이군현 이한성
조영택 홍영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입법심의관	이정득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구희권
기획조정실장	진정구
국회도서관	
관장	유재일
기획관리관	이정화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손심길